

제69회 구의회(임시회)
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사항

확인자 : 도시개발과장 성명 : 송호길 (인) *송호길*

작성자 : 도시개발계장 성명 : 배병진 *배병진*

현 장 별	건의 및 지적사항	조 치 사 항
구평동 택지개발사업장 (구평동 산38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토석채취 및 반출시공업체 (주)정도개발, (주)석원건설 외 토석채취 및 반출물량이 당초 계획물량의 10%이내고 '98. 4. 14 발파공사 중단으로 '98. 8. 12 이후 토석채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'98. 9. 30자로 토석채취 및 반출시공업체의 계약기간 만료시는 이후 시공업체를 건설한 기업체로 재선정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겠으며, · 사업장 안팎으로부터 각종 소음, 진동, 분진에 의한 주민피해사항에 대하여 출입차량 덮개 설치, 출입구, 하수구 정비등 안전시설 재정비가 요망됨. 	· 구의회 건의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장에게 빠른시일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통보 [개발58541-1426('98.9.10)]

첨부 : 관련공문 사본 1부. 끝.

제69회 구의회(임시회)
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사항

확인자 : 환경지도계장 성명 : 김기석(인)

작성자 : 지방화공주소보 성명 : 이재율(인)

현장별	건의 및 지적사항	조치사항
구평동 택지개발 사업장	사업장 안팎의 소음,진동,분진에 대한 재정비 요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원건설: 골재 운반차량 통행시 세륜세차시설이용, 덮개설 치 및 공사장주변 살수차량 이용하여 비산먼지 억제토록 지시 ○ 고물상(대암철강): 고물상입구 주변도로 토사제거 지시 (98.9.12한) ○ 협신건설 (장림하수처리장2단계차집관로공사시공업체): 공사장주변 및중양선 안전막주변 토사제거 지시, 도로청소 상시인부 고정배치 지시 ○ 환경보호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민원사항 해결토록노력

제69회 구의회(임시회)

현장방문활동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

확인자 : 건설과장 성명 하정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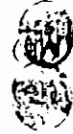
작성자 : 건설행정계장 성명 배문택



현장별	건의 및 지적사항	조치사항
구평동 택지개발 사업장	○ 공사장 주변 하수구 정비 및 안전시설 재정비 요망	○ 골재선별파쇄 시공자인 석원건설에 공사 장 내 우수가 인근 하수구로 유입이 원만 히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촉구하였으며 ○ 골재선별파쇄장 사업장 주변을 재점검하 여 안전시설 미비점이 있을 시 재점검토 록 조치

제69회 구의회(임시회)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따른 조치사항

확인자 : 환경지도계장 성 명 : 최병호
작성자 : 지방환경주사보 성 명 : 이상학



현 장 별	건의 및 지적사항	조 치 사 항
<p>신평동 산업폐기물 소각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소각장 소각시설이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시험가동중이며, 시험가동후,다이옥신 기준치가 0.5ng이하인 경우 인수를 하여 6개월 이내 기준치 0.1ng이하로 가동하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임 ○시험가동후 인수는 한국기술연구원 의 성능검사를 거쳐 행정절차인 부산시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게 되어 있음 ○소각시설 가동시는 인근 약8km까지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바,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를 신청하는 방향모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<u>다이옥신은 1일 5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</u> 대하여만 적용이 되며 사업장·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음 ○동시설의 다이옥신에 대한 질의 내용은 회사와 주민간의 협상안 작성시 포함되었으나,주민반대(투표결과)로 부결되었음 ○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설등)설치와 관련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(폐촉법)규정에 의거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되며, 간접영향권의 범위도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(단,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의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)으로 규정되어 있음 ○우리구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